

# 순천대학교 농업과학연구소규정

제정 1986. 9. 26.  
개정 1992. 8. 10.  
개정 1995. 6. 20.  
개정 1997. 7. 14.  
개정 2004. 9. 08.  
개정 2013.10. 02.  
개정 2017. 7. 14.  
개정 2020. 11. 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순천대학교학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천대학교농업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연구소는 농업과학에 관련된 제반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농업 및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연구사업 및 지원
2. 학술발표회 개최
3. 논문집 발간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3조(연구부서 및 소관학과) 연구소에는 소장 외에 다음과 같이 연구부를 둘 수 있다.(개정 2017. 7. 14, 2020. 11. 3.)

1. 생명자원연구부 : 웰빙자원학과(개정 2017. 7. 14.)
2. 산림자원연구부 : 산림자원전공(개정 2017. 7. 14.)
3. 동물자원과학부연구부 : 동물자원과학과(개정 2017. 7. 14.)
4. 원예연구부 : 원예학과(개정 2017. 7. 14.)
5. 식품공학연구부 : 식품공학전공(개정 2017. 7. 14.)
6. 농업기계연구부 : 산업기계공학과(개정 2017. 7. 14.)
7. 농업경제연구부 : 농업경제학과(개정 2017. 7. 14.)
8. 생물환경연구부 : 생물환경학과(개정 2017. 7. 14.)
9. 식물의학연구부 : 식물학과(개정 2017. 7. 14.)
10. 조경연구부 : 조경전공(개정 2017. 7. 14.)
11. 한약자원연구부 : 한약자원개발학과(개정 2017. 7. 14.)
12. 식품영양연구부 : 식품영양학전공(개정 2017. 7. 14.)
13. 조리연구부 : 조리학과(개정 2017. 7. 14.)
14. 생물연구부 : 생물학과(신설 2017. 7. 14.)
15. 보건연구부 : 간호학과(신설 2017. 7. 14.)
16. 농업교육연구부 : 농업교육과(신설 2020. 11. 3.)

제4조(조직) ① 연구소에 소장, 각 연구부장 및 간사 약간명을 둔다.

② 소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연구소를 대표하며 소관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③ 각 연구부장은 제3조에서 정한 학과(전공)장이 당연직이 되며 해당 연구부의 사업을 한다.(개정 2017. 7. 14.)

④ 간사는 연구부장중에서 소장이 위촉하며, 소장을 보좌하여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연구원) ① 연구소에는 겸임연구원, 전임연구원, 연구보조원, 객원연구원, 특별연구원, 박사후연구원을 둘 수 있다. (개정2013.10.02.)

② 겸임연구원은 이 대학교 생명산업과학대학의 전임교원으로 한다. (개정2013.10.02., 2017. 7. 14.)

③ 연구보조원은 고등학교졸업이상 학력 소지자로서 연구부장의 추천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소장이 위촉한다. (개정2013.10.02.)

④ 특별연구원은 협동연구수행자 또는 농업과학분야 국내외 전문가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할 수 있다.(개정 1997.07.14, 2013.10.02)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연구소에 운영위원회를 두고 운영위원회는 소장과 각 연구부장으로 구성한다.

제7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연구소의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 2.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연구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4.연구지 발간에 관한 사항
- 5.기타 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위원 5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대학지원금, 위탁연구비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부 칙(1986. 09. 26.)

이 규정은 1986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 08. 1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6. 2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7. 1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9. 0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0. 0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7. 1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1. 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